

[사 건 명] 행심 2018 - 1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  
력으로 2017. 12.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  
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 22.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3.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기 초부터 ○○○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 참지 못하고 대응하여 일어난 사건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건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립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과 ○○○ 양측에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위법하다.

나.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적용 세부기준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한 판정을 하고 처분결정을 해야 하나, 학폭위 회의록에는 점수표조차 없는 등 절차상하자가 있다.

다. 청구인은 무차별 주먹질을 하는 ○○○를 밀쳐낸 것뿐으로, 이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주도하여 ○○○를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는 ○○○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인정하여 본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본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청구인과 ○○○ 측이 제출한 자료, 진술서, 목격자 진술, 전, 현직 담임선생님의 의견청취, 상담일지, 누가기록 등 능동적 조사과정을 거쳐서 상호 간에 가해 및 피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서 적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나.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보면, 학폭위 위원 출석과 반수로 피해학생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2호 처분을,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5호 처분을 각 부과할 수 있고,

학폭위는 청구인과 ○○○ 학생 간 다툼이 ○○○ 학생이 원인제공을 하여 시작된 것은 맞지만 학기 초인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지속되었고, 서로 간 피해만 호소할 뿐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과만 요구하는 상태여서,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로 의도적인 접근을 막아 추가폭력, 보복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치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차별적으로 주먹질을 하는 ○○○에 대항해서 ○○○를 밀친 것뿐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단순 밀치기만 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이 가해행위를 할 때 ○○○가 무차별 주먹질을 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 간 다툼과정에 청구인이 가한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학폭위는 ○○○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치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 측 주장, 제출자료, 전, 현직 담임선생님과의 전화통화, 상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구인과 ○

●● 간 상호 가해 및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서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본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폭법에서 정의하는 폭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상담일지 등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학기 초인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와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2017. 12.경 청구인이 눈과 흙이 묻은 발로 ●●●의 엉덩이부위를 차거나, ●●●가 동급생 ○○○과 다투는 것을 듣고서 ●●●에게 가서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이 2017. 12.경 ○○○를 발로 차고, 꼬집는 등 행동을 한 것은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 3.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인 ○○○가 어눌하고 자기표현을 잘 못하며, 수업시간에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학교규율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주장이 강했던 청구인은 그러한 ○○○ 행동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와 자주 부딪치면서 다투기까지 하자, 전 담임선생님이 청구인에게 ‘○○○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대응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했지만 둘 간의 다툼은 지속됐고, 2학기 때는 ○○○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청구인은 계속 힘들어하여, 전 담임선생님이 청구인 부모님과 그 문제를 상담까지 했지만 2017. 12. 경에도 청구인이 ○○○를 발로 차거나 꼬집는 등 행동을 한 것이고,

2017. 12. 26.경 현 담임선생님이 청구인이 ○○○를 때리려 하는 것을 발견보고 이유를 물어보니 청구인이 ‘○○○를 보면 그냥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학기 초부터 지속된 청구인과 ○○○ 간 다툼은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고, 청구인과 ○○○ 측 모두 서로의 피해사실만 주장하고 가해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받기만을 바라는 등 침묵하게 대립하고, ○○○는 심리치료를 신청하고, 청구인도 병원치료까지 받는 등 본 사건이 청구인과 ○○○ 양측에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어서, 피해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청구인과 ○○○ 양측에 대하여 학폭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 각 처분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